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0호
----------	--------

제출년월일 2022. 8. .
제 출 자 기획담당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불부합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1.13.) 제정으로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청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불부합 인용 조항 정비
(안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4조)
- 나. 주민조례발안 관련 조문 및 조항 삭제 (안 제1조, 제12조제2항, 제18조,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 평가 : 원안동의
 - 다)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나) 경 기 도 : 법무담당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를 “자치법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재하여”를 “계재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66조의3”을 “제7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시의회”를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로,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3조제2항”을 “법 제149조제2항”으로 한다.

제5장(제18조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기획담당관 황규만
	팀장 직위·성명	법무통계팀장 강신준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양성지(☎229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김포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 ----- ----- <u>자치법</u> <u>규</u>----- ----- ----- -----.</p>
<p>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김포시 시보(이하 “시보” 라 한다) 및 인터넷에 <u>게제하여</u> 공고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 ----- ----- <u>게제</u> <u>하여</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u>제66조의3</u>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 ----- <u>제7</u> <u>8조</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생략)</p> <p>② <u>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김</u></p>	<p>제12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포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 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제13조(공포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4조(공포 방법 등) ①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8조(연서 주민의 수) 법 제15조제1

제13조(공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

제14조(공포 방법 등) ① -----

----- 법 제32조제6항-----

② 법 제149조제2항-----

<삭제>
<삭제>

항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連書)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시행 2022.03.0.] (일부개정) 2022.03.30. 의회규칙 제30호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5.9)<개정 2021.12.3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김포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문의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김포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다.

제3장 비용추계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

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13조(공포 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4조(공포 방법 등) ①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포일) 자치법규 및 예산과 결산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7조(시행일) ①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8조(연서 주민의 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連書)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